

#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고려한 결과를 중심으로 -

조 흥 식\*\* · 민 원 홍\*\*\* · 김 현 민\*\*\*\*

## 〈 요약 〉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형사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는지를 추정하도록 한다. 범죄의 예방단계, 결과단계, 그리고 대응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고, 해당하는 항목의 범죄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인해 약 36조 5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범죄 예방단계에서의 비용은 약 11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범죄 실행에 따른결과단계에서의 비용은 약 15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42.2%에 해당하며, 결과에 따른 대응단계에서의 비용은 약 9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26.3%

\* 이 연구는 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chohs@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minwonh@nate.com)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imagine123@naver.com)

에 이른다. 즉,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예방·결과·대응단계 중 결과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그 다음이 예방단계, 대응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살인, 교통, 강간 등 상대적으로 범죄의 심각성이 높은 범죄유형에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높았다는 점이다.

매년 범죄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한 비용 추정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회적 비용, 범죄, 예방단계, 결과단계, 대응단계

## 1.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갈등적인 인간관계 등 급격한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범죄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범죄의 동향과 범죄사건의 처리, 범죄자에 대한 처우 등 형사정책을 수립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와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범죄발생건수나 범죄피해자의 수 등의 지수만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구가 더 진행되고 축적되어야 하는가?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보는 것이 이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범죄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특정 범죄유형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은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고, 결국 범죄관련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이 왜 필요한가와 관련하여 Cohen, Miller 그리고 Rossman(1994)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범죄들에 대한 통계치를 단일한 화폐가치로 묶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죄에 의해 유발된 상대적 피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정책 결정자들에게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즉,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추정은 형사사법 정책 관련 연구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기존의 형사사법 정책이나 각종 프로그램들의 비용·편익을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성 분석은 기존의 형사정책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대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준다.

더 나아가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은 국가가 범죄 감소 및 국민의 안정 등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운영하는데 드는 국가예산과 자원에 대해 정당성을 제공해주고, 국가가 범죄의 영향을 줄이는 데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박철현·박정선·송태정(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 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역시 중요 5대 청소년범죄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 밖에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유사한 연구가 있다면 교통사고에 초점을 둔 연구들(왕영숙, 2000; 이수범·심재익, 2001; 김현주, 2003; 심재익·유정복·최병호, 2005; 유정복, 2008)이 있는 정도이다.

한편, 국외에서는 이미 2000년도 이전부터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호주의 경우 1996년 한 해 동안 호주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Walker, 1997)가 실시된 바 있다. 미국은 특정 범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Cook and Ludwig, 2000)를 비롯하여, 범죄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 추정방법을 사용한 연구(Cohen et al, 2004)와 청소년 범죄와 같이 특정 집단의 범죄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Welsh et al, 2008) 등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내무부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Brand and Price, 2000; Dubourg and Hamed, 2005)가 비용추정의 대표적인 연구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본 연구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호주의 연구(Walker, 1997)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던 기존 연구들 중에서 최소(minimum) 추정치에만 초점을 두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연구가 이러한 방법론을 택한 이유는 지나치게 과장하여 범죄비용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아 이러한 과대추정문제를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영국에서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Brand and Price, 2000)는 최소값(low), 최적값(best), 최고값(high)을 구분하여 범죄의 비용추정값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값으로만 추정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간접적인 비용추정 기법을 사용한 반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범죄피해 관련 조사 및 기관자료를 기반으로 직접적인 비용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건데, 본 연구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단계와 결과단계, 대응단계를 각기 구분하여 해당하는 단계의 범죄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각 단계에서 범죄유형별로 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을 추정할 때에는 범죄의 심각성 지수를 고려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 2.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시 고려사항

### 1) 범죄의 유형구분과 범죄의 발생빈도

#### (1) 범죄의 유형

범죄는 그 개념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계속되는 신종범죄의 등장으로 인해서 연구진행시 어떤 범죄를 연구의 범죄유형으로 포함시켜야하는 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백서(경찰청, 2009),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09), 검찰연감(대검찰청, 2009) 등이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자료원으로서 이용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백서(법무연

수원, 2009)를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구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각각의 형사사법 기관별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2) 범죄의 발생빈도(건수)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데 범죄의 발생빈도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먼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범죄보다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는데 더 주의를 기울이고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해당 범죄의 1건당 평균비용을 산출할 때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평균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됨으로 범죄의 발생빈도는 비용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위의 논의는 범죄의 발생빈도를 측정한 이후 범죄의 발생빈도가 범죄비용 추정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것이고, 사실상 범죄의 발생빈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범죄의 피해건수는 실제 발생하는 건수보다 적기 때문에<sup>1)</sup> 비용추정 시 이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09)를 기준으로 범죄의 발생건수를 구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각각의 형사사법 기관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3) 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심각성(crime seriousness)은 범죄유형별로 볼 때에 과연 해당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또는 해로운 범죄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박철현 외, 1999). 범죄의 심각성의 개념은 상이한 문화나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합

<sup>1)</sup> 현실적으로 실제 범죄발생건수보다 범죄피해사건으로 보도되는 건수가 훨씬 적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우선 감시망에서 벗어나 관찰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록에서 제외되는 범죄건수가 있기 때문이다. 소위 숨은 범죄라 불리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김준호·심영희·조정희, 1991). 마지막 이유는 하나의 범죄행위에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및 범죄처벌방식의 예외사항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죄가 성립할 경우 가장 무서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재물손괴미수죄와 과실치사죄라는 2개 이상의 죄가 성립할 경우 재물손괴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현실에서 발생한 범죄와 달리 범죄발생건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범죄 중에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강간죄나 간통죄 등의 ‘친고죄’와 고소가 없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등의 ‘반의사 불벌죄’ 등도 고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건수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발생한 범죄건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Scott and Al-Thakeb, 1977; O'Connell and Whelan, 1996), 한 문화 또는 한 국가 내에서의 집단 간 합의 통해 정의될 수 있다(Rossi, Emily et al, 1974; Levi and Jones, 1985; Corbett and Simon, 1991). 본 연구에서는 박철현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박철현 외, 1999)에서 도출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들에 관한 심각성 점수들을 적용함으로써 각각의 범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한다.

## 2) 비용추정을 위한 경제학적 개념

비용추정을 위해 고려할 경제학적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기회비용, 이전비용, 사회적비용이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란 어떤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인해 포기해야하는 여러 행위 중 가장 큰 가치를 갖는 행위의 가치를 의미한다(이준구·이창용, 2005). 본 연구의 예로, 범죄예방차원에서 방법 및 보안을 위한 도구를 구입함으로써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행위들을 포기해야하는 비용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물론 기회비용은 이러한 물질적·경제적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비용과 같은 정신적·감정적 부분, 즉 비화폐적이고 비경제적인 부분도 포함한다.

다음으로 이전비용(transfer payments)을 들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치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보장비용, 보조금 또는 도박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인데, 이러한 이전비용은 사회적 손실로 인식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이전비용으로 처리되는 비용으로는 범죄예방차원에서 지불하는 보험료를 들 수 있다. 피해자가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보험금은 단순히 한쪽(보험회사)에서 다른 쪽(범죄피해자)으로 이전되는 금액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금 등의 이전비용은 본 연구에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데 제외시키도록 한다. 단,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에 해당되므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는데 포함시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제적 비용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온다. 경제적 비용은 빼앗긴

재산 가치나 범죄 예방 및 법 집행에 소비된 비용 등의 즉시 화폐 가치화될 수 있는 비용 인데 반해, 사회적 비용은 사회에 충격을 주지만 즉시 금전으로 명확하게 환산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sup>2)</sup> 따라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할 때에는 범죄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의 의미에 경제적 비용의 의미를 포함하기로 한다.

### 3)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형태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형태에는 유형의 비용(tangible cost)과 무형의 비용(intangible co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의 비용항목에는 주로 범죄피해자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비용 및 임금 등이 포함되며, 무형의 비용항목에는 치명적 범죄로 인한 삶의 가치 및 비치명적인 범죄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및 고통, 상처 등이 포함된다(Cohen, 1988). 특히, 무형의 사회적 비용에는 신체적인 상처나 심리적인 외상 등에 따른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삶의 질 저하와 같은 범죄 피해(crime victims) 차원의 비용과, 범죄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밤에 외출자제, 특정 우범지역을 우회하기 등과 같은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사회적 공포의 증가 등의 잠재적 피해(potential victims)차원의 비용, 그리고 범죄 발생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관광이나 소비의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둔화 등의 지역사회 차원의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Welsh, Farrington, and Sherman, 2001).

이렇게 범죄로 인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범죄의 피해자 조사와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추정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범죄로 인해 빼앗긴 재산가치나 법원으로부터의 배상명령 등의 자료 및 조건부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sup>3)</sup> 등을 통해 추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한편, Demmert(1979)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그 첫째는 범죄자로 인한 피해자와 그 밖의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

<sup>2)</sup> Cohen(2005)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범죄문제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사회적 비용에 범죄의 감소에 대한 비화폐적 편익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자원의 잘못된 할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sup>3)</sup> 조건부가치 측정법이란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범죄들을 예방하는 데에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보아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이다(Giracy-Wantrup, 1952; Davis, 1963).

용이다. 범죄의 결과로 인한 이 유형의 비용은 범죄의 피해자들에 의해 초래되는 비용으로, 이는 다시 손상된 재산·의료비용 등 유형의 피해자 손실(tangible losses)과 삶의 질 감소·신체나 정신적 고통 등 무형의 피해자 손실(intangible losses)로 구분된다. 둘째는 사회가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국가가 형사사법체계를 통해 범죄와 관련한 예방 및 통제행위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셋째는 범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다. 즉, 범죄자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 소비하는 시간과 자원들에 관한 비용으로서 사회는 이러한 비용이 없게 되면 그 만큼의 편익을 얻게 된다.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받고 있는 동안에 범죄자의 시간 비용이 이에 해당된다(Cohen, 1998).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유형화된 비용 개념을 사용하여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비용의 이러한 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범죄단계를 예방 단계, 결과단계, 대응단계로 구분하고(Cohen, 1998; Brand and Price, 2000), 각 단계별로 해당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게 된다.

### 3. 비용의 단계별 추정방법

#### 1) 예방단계

예방단계는 범행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범죄 예방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과 보안을 위한 물리적인 도구와 서비스의 구입, 그리고 보험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범죄예방단계의 비용으로 포함시키려고 한다(박철현 외 2명, 2007). 물리적인 도구를 구입하는 비용과 서비스혜택을 받는 비용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안장치구매비용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설정하며, 구체적인 비용계상은 세콤(법인명 에스원)의 1년 매출액을 중심으로 한다.

다음으로 보험사유지비용은 이전비용과 기회비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불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로 그 가치가 이전될 뿐이지 사회적 손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로 지불한 금액은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포함할 필요가 없고, 다만 범죄가 없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보험사 유지비용은 기회비용이므로 이 비용을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 밖에 조심 및 회피행동비용, 범죄에 대한 공포 및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비용 등과 관련된 비용은 추정근거가 박약하여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불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집단 및 지역사회의 범죄방어비용과 정부의 범죄예방활동은 개념적으로는 예방단계의 비용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응 단계에서의 검찰과 보호관찰,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의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응단계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 2) 결과단계

범죄의 결과단계는 범죄 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가령, 범죄가 교통범죄였다고 할 경우에 자동차 손실과 같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신체적 손상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생산차질비용 및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등도 이 단계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항목에 신체적·정신적 피해, 피해자가족 지원비용, 생산차질비용, 의료비용, 빼앗긴 재산 가치 등을 추정가능한 항목으로 선정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객관적으로 활용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3) 대응단계

대응단계는 범죄추정단계의 마지막 단계로, 경찰<sup>4)</sup>, 검찰<sup>5)</sup>, 법원, 소년보호,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sup>6)</sup>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sup>7)</sup> 범죄의 대응단계에서 형사사법기관

4) 경찰예산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2008 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보고서(경찰청)를 참조하도록 한다.

5) 검찰예산의 경우, 검찰연감(대검찰청, 2009)에 나온 세출예산내역을 참조하도록 한다.

6) 보호관찰, 소년보호, 교정예산의 경우 범죄예방정책국 내부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 예산의 경우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예산, 즉 갱생보호사업의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7) 물론 경찰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에서부터 형사사법단계에 까지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범죄대응단계에만 포함하

들의 기관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범주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비용 외에도 재판에서의 오심, 증인의 경제적 기회비용과 정신적 비용, 가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 부모의 구금으로 인한 가해자 자녀들의 부적절한 양육 등도 이 단계에 포함되는 비용이지만 그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정불가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범죄 비용구조 요인과 자료의 이용가능성

단계	분류 <sup>8)</sup>	자료원
예방 단계	방법 및 보안경비	세콤(2008)
	보험사 운영·유지비용	보험개발원(2008), 손해보험협회(2008)
	예방적 행위(조심 및 회피행동비용)	추정불가
	범죄에 대한 공포 및 삶의 질 저하	추정불가
	집단 및 지역사회 범죄방어비용	대응단계에 포함
	정부의 범죄예방활동	대응단계에 포함
결과 단계	신체적·정신적 피해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I),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2010)
	피해자(가족) 지원비용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자료
	생산차질비용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I), 통계청 자료
	의료서비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관리사업 결산액
	빼앗긴 재산가치	범죄백서 2009
	회복된 재산가치	추정불가
	보험금 지급액	추정불가
	피해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저하	추정불가

는 것은 각 단계별 추정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예방단계와 실행 단계, 대응단계의 어느 한 단계에 포함되어 결국 총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박철현·박정선·송태정, 2007)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다른 여타 형사사법기관들과 묶어서 대응단계로 위치시켜 계상하도록 한다.

<sup>8)</sup>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범죄의 비용구조요인에 따른 분류는 영국 내무부의 연구(Brand and Price, 2000)에서의 정의한 분류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수정한 박철현·박정선·송태정(2007)의 연구에서의 분류를 따랐다.

대응 단계	경찰	각 기관의 결산내역	
	검찰	각 기관의 결산내역	
	법원	각 기관의 결산내역	
	보호	소년보호	각 기관의 결산내역
		보호관찰	각 기관의 결산내역
		법무보호복지(갱생보호)	공단 내부자료
	교정	각 기관의 예산내역	
	재판에서의 오심	추정불가	
	증인의 경제적·정신적비용	추정불가	
	가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	추정불가	
가해자 자녀들의 부적절한 양육	추정불가		

## 4. 범죄유형별 1건당 평균비용

### 1) 비용추정의 단계별 추정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앞서 논의했던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의 세 단계를 중심으로 하여 비용추정을 하였다. 즉, 예방단계, 결과단계, 대응단계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근거로 각 단계별로 범죄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1) 예방단계

##### ① 보안장치 구매비용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최근 상용화된 영상관제시스템 등의 보안장치는 침입절도, 자동차절도 등의 재산범죄를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도와 손괴범죄만을 예방관련비용에 포함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안경비업체 중 세콤(법인명 에스원)이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고, 2, 3위에는 각각 캡스(법인명 ADT캡스)와 KT텔레캅(법인명 텔레캅서비스)이 위치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콤의 2008년도 매출액을 중심으로 전체경비를 산출하였다. 세콤의 매출액은 2008년도 기준 751,538,748,004(약 7천 5백억)원<sup>9)</sup>으로 전체 보안경비산업시장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임을 고려할 때에 다음과 같이 보안경비산업시장의 총매출액을 구할 수 있다. 산출결과 2008년 보안경비산업시장의 총매출액은 약 1조 3천억으로 추정된다.

- 보안경비산업시장 총매출액 = 751,538,748,004원 \* 100/60 = 1,252,564,580,006원

## ② 보험사 운영·유지비용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범죄를 당하였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예방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예방비용에 보험금 자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보험금은 추후에 범죄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전될 이전비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보험업계가 보험사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만을 산출하는 것이 범죄의 예방비용으로 적절하다.

보험사의 유형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보험사 유지비용을 범죄유형 중에서 어느 카테고리에 포함시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보험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명보험 상품은 보험목적에 따라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된다.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보험과 달리 납입보험료보다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금이 큰 보험이다. 이러한 생명보험사들의 대부분의 보험상품들은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등이 이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예방비용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추정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운영비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금 지불 이유가 범죄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비범죄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파악해본 보험가입의 목적과 실제 사용가능한 연구

<sup>9)</sup> 전자공시사이트: <<http://dart.fss.or.kr>>

자료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생명보험유지비용은 비용추정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의 경우는 크게 비자동차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나뉜다. 비자동차보험은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보통상해보험, 해상보험, 여행보험, 부동산권리보험, 장기손해보험으로 분류되며,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대물배상,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으며, 범죄유형과 결부시킨다면 교통범죄와 관련이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비자동차보험이 강도, 절도, 방화와 연관되고, 자동차보험은 교통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에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 유지비용을 범죄예방비용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 유지비용이 모두 범죄만을 다루는데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험 유지비용 전체를 비용추정에 모두 포함하면 비용이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강도·절도·방화나 교통범죄 등 각 범죄가 손해보험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보여주는 자료도 없어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손해보험유지비용 전체를 보험사 운영·유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보험사의 운영·유지비용은 구체적으로 인건비나 건물임대료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기초로 손해보험사의 유지비용을 살펴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10,284,724,000,000(약 10조 3천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sup>

## (2) 결과단계

본 연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발생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에 포함시킨 항목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피해자(가족) 지원비용, 생산차질비용, 의료비용, 빼앗긴 재산가치 이렇게 다섯 가지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을 산출하기 위해 관련부처의 자료와 연구논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이를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비용은 2009년에 실시된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I)(김은경·최수형·박정신, 2009)의 결과에서 제시하는 신체적 피해의 평균비용과 정신적 피해의 평균비용 및 2008년 우리나라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인원수(김현철, 2010)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피해자(가족) 지원비용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액과 민간범죄피해센터지원금을 활용하며(법무부, 2010), 생산차질비용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일상생활 중단일수와 정

<sup>10)</sup>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신과 치료일수를 합산하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 수치에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의 생산활동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의료서비스비용은 소방방재청의 소방정책관리사업 결산액을 토대로 산출하였고, 마지막으로 빼앗긴 재산가치는 범죄백서(법무부연수원, 2009)에서 제공하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재산가치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 ① 신체적·정신적 고통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 가치와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고 추정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진술선호법<sup>11)</sup> 등의 간접적인 추정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오늘날 그 유용성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김태운·김상봉, 2004; 김동건,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직접적으로 2009년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결과에서 제공하는 2008년 국민 1인당 신체적 피해의 평균비용(1,123,000원)과 정신적 피해의 평균비용(417,900원)을 합산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 2008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전체 인원수(1,218,164명)(김현철, 2010)를 곱함으로써 전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비용을 추정하였다.

$$\bullet (1,123,000\text{원} + 417,900\text{원}) * 1,218,164\text{명} = 1,877,068,907\text{원}$$

### ② 피해자(가족) 지원비용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재원으로 삼고 있다. 또한 2004년 12월부터 운영되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의 발족으로 구체적인 범죄피해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가족 지원비용을 법원으로부터의 배상명령사건에 대한 배상명령액<sup>12)</sup> 및 법무부 인권국

<sup>11)</sup>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s)은 실재하지 않는 시장을 가상적으로 만든 후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가상시장에서 응답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며, 가상적 상황 설정에 대한 자신의 응답과 행동의 일치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모의시장(simulated market)을 만들어 참가자들이 모의시장에 참여하여 실제로 거래행위를 하도록 할 수가 있다. 진술선호법에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M), 조건부순위결정법(contingent ranking methods, CRM),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 등이 있다(권오상, 2007).

인권구조과가 검찰통계시스템의 자료로부터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액<sup>13)</sup>과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의 규모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646,650,3210원(피해자 가족지원 비용) = 83,326,196,000원(배상명령액) +  
1,411,000,000원(범죄피해자구조금) +  
1,729,307,210원(범죄피해자센터 지원금)

### ③ 생산차질비용

범죄 피해자들은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생산차질비용은 범죄의 결과로서 노동시간의 상실에 대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부연하건대, 피해자들에게 범죄의 결과로서 노동에 참여하지 못한 시간의 양에 평균 임금 비율을 곱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생산차질비용이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일상생활중단일수와 정신과 치료일수를 합하여 피해자의 노동 비참여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1인당 월평균임금(2,891,377원)곱하고, 이를 다시 하루 평균임금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임금손실액을 구하였다<sup>14)</sup>. 그 후 전체 피해인원수를 적용하여 전체 피해자의 생산차질비용을 구하였다.

- 77.43일\*(2,891,377원\*12/365)\*1,218,164일=8,966,194,615,932원

### ④ 의료비용

의료비용 역시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생기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119응급 지원을 위한 사업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의료보험 자체보다 더 높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때문에 사회에 큰 부담을 가

<sup>12)</sup>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3월 1일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범 중 일정한 범죄, 즉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과실치사상,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위 특정의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김현철, 2010).

<sup>13)</sup>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유족구조금(1,345,000,000원)과 장해구조금(66,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sup>14)</sup>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한 달 기준 약 20일 정도를 일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1일 수당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기준으로 또는 연봉으로 근로소득을 얻기 때문에 하루평균임금의 계산 기준을 20일(즉, 12달\*20일=240일)이 아니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의료비용의 추정은 행정비용 추정의 불가능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119응급 지원사업과 관련한 2차 자료를 통해 추정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의 소방정책관리사업 결산액인 56,142,910,830원을 의료비용으로 간주하였다.

### ⑤ 빼앗긴 재산가치

빼앗긴 재산가치는 범죄피해자들에게 범죄로 인해 빼앗겼거나 피해를 입은 재산의 가치, 재산의 손실에 대해 제공받은 보험금액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도출된 범죄백서(법무부연수원, 2009)에서 제공하는 2008년 한 해 동안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산정한다. 즉, 절도가 271,641,700,000원, 사기는 2,804,092,300,000원, 횡령은 806,128,000,000원, 그리고 배임은 617,915,700,000원으로 전체 합계금액이 4,499,777,700,000(약 4조 5천억)원이 된다.

$$\bullet 4,499,777,700,000 = \text{절도}(271,641,700,000\text{원}) + \text{사기}(2,804,092,300,000\text{원}) + \text{횡령}(806,128,000,000\text{원}) + \text{배임}(617,915,700,000\text{원})$$

### (3) 대응단계

대응단계는 범죄발생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단계별 형사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각 형사사법기관의 200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기관별로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 소년보호, 갱생보호, 교정, 로 분류하여 각 기관별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범죄 대응 비용을 추정하였다. 경찰청의 경우 총지출액이 6,803,950,000,000(약 6조 8천억)원으로 검찰의 경우 629,021,728,000(약 6천 3백억)원, 법원의 경우 1,745,399,000,000(약 1조 7천억)원,<sup>15)</sup> 보호관찰이 68,393,000,000(약 6백

<sup>15)</sup>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형사사법기관별 2008년도 세입·세출보고를 참조하였다. 법원의 경우, 법무부 소관 기관의 총 지출액인 2조 1,192억 8,700만원 중 검찰과 교정,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등의 프로그램 활동 지원비는 별도로 분류하여 범죄비용으로 계상할 것이므로 제외시켰고, 그 밖의 법무활동, 출입국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부연수원,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8십억)원, 소년보호가 55,086,000,000(약 550억)원, 갱생보호가 9,096,000,000(약 91억 원)<sup>16)</sup>, 그리고 교정이 998,381,000,000(약 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 2) 범죄유형별 1건당 평균비용추정

본 연구에서 범죄의 각 단계별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은 각각의 범죄유형별로 심각성 점수를 고려하여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sup>17)</sup>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다양한 범죄들 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각 비용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범죄의 항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 (1) 예방단계

예방단계에서의 전체 사회적 비용은 11,537,288,580,006(약 11조 5천억)원으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범죄의 심각성정도를 고려하여 범죄비용을 추정해보면, 절도로 인해 들어가는 보안경비 비용은 총 1,252,564,580,006(약 12조 5천억)원으로 구체적 범죄유형으로 구분해 볼 때 절도범죄의 경우 범죄 1건당 5,066,754원이고, 손괴범죄의 경우 1건당 2,973,965원에 이른다. 보험사 유지비용은 총 10,284,724,000,000(약 10조 3천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교통범죄가 1건당 12,399,65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도가 8,605,727원으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sup>18)</sup>.

<sup>16)</sup>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은 법무부 소속 특수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담안선교회를 비롯한 7개 민간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민간의 경우 2008년 전체 국가보조금이 약 4억8천3백만원이었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범죄유형별 보호실적을 파악할 수 없어서 비용추정에서 제외시켰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08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예산의 경우 국가보조금 결산액 6,384백만원과 자체수입으로 인한 결산액 2,712백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sup>17)</sup> 가중치를 고려하여 범죄유형별 비용을 추정할 경우, 우선 범죄유형별 발생건수와 심각성점수를 곱하여 범죄유형별가중치를 산출하게 된다. 부연하건데, 발생건수와 심각성점수를 곱한 값을 범죄의 중요도로 간주하고, 전체 범죄의 중요도를 합산하였을 때 1이 되도록 수치를 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수치를 가중치(유형비중별 비율)로 간주하여 전체범죄유형 중 특정 범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고려하여 범죄유형별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게 된다.

<sup>18)</sup> 예방단계 및 결과단계에서 적용한 범죄유형별 발생건수는 범죄백서(법무부연수원, 2009)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 (2) 결과단계

결과단계<sup>19)</sup>에서의 전체 사회적 비용은 15,485,650,637,572(약 15조 5천억)원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차질비용이 약 9조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항목이고, 빼앗긴 재산가치가 4,499,777,700,000(약 4조 5천억)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살인과 강간 범죄항목이 없는 빼앗긴 재산가치를 제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피해자 가족지원, 생산차질비용, 의료비용은 1건당 평균소요 비용이 살인과 강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빼앗긴 재산가치 항목의 경우에는 강도, 방화, 횡령·배임 및 위조가 1건당 평균비용이 1억(위조의 경우 10,322,159)원에서 1억2천 사이(강도의 경우 12,307,189)의 값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3) 대응단계

대응단계에서의 전체 사회적 비용은 총 9,631,599,728,000원(약 9조 6천억원)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과 검찰, 법원, 보호관찰, 갱생보호, 소년보호, 그리고 교정의 경우 모두 살인과 강간<sup>20)</sup>, 교통의 순서로 1건당 평균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21)</sup>.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은 상위 범죄항목(살인, 강간, 교통범죄)만을 중심으로 그 내역을 비교해보면, 경찰, 법원, 교정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값은 각각 2,617,095,220,685(약 2조 6천억)원, 871,406,174,528(약 8천 7백억)원, 543,242,536,820(약 5천 4백억)원이다.

<sup>19)</sup> 결과단계에서 교통범죄건수는 검찰연감(대검찰청, 2008)을 바탕으로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그러나 대응단계의 경우 경찰(633,864건)과 검찰(676,885건), 법원(513,326건)을 제외한 보호관찰, 소년보호, 갱생보호, 교정 등의 사후처리적 혹은 보호적 성격의 형사사법 기관의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였기에 해당 교통범죄 건수만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없어 전체 교통건수를 모두 교통범죄건수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sup>20)</sup> 본 연구에서는 강간범죄의 경우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성과 관련된 범죄들로 추정하였다.

<sup>21)</sup> 앞서 언급했듯이, 대응단계에서 각 형사사법기관별 범죄의 발생건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즉 경찰의 경우 경찰백서(경찰청, 2009), 검찰은 검찰연감(대검찰청, 2009), 법원은 사법연감(대법원, 2009), 보호관찰은 보호관찰통계연보(2009) 및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부자료, 소년보호는 범죄백서(법무부연수원, 2009) 및 사법연감, 갱생보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내부 자료, 그리고 교정은 범죄백서 및 사법연감을 참고하였다. 특히 교정의 경우 범죄백서에서 제공하는 수행자 죄명별 범죄유형별 발생건수가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사법연감에서 제시하는 판결 내용 중 사형 및 유·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건수를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 3) 범죄유형별 사회적 비용 추정

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적용하여 해당 범죄가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1건당 사회적 비용의 합계를 추정한 결과, [표 5]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해당하는 모든 범죄의 1건당 총 합계평균비용은 760,165,676(약 7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범죄들 중에서 살인이 117,563,802원으로 1건당 세 단계의 합계평균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간이 96,863,198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강도가 79,871,467원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범죄 1건당 각 단계마다 설정된 비용항목별로 평균합계비용을 살펴보면, 예방단계에서는 보안경비비용의 경우 절도범죄와 손괴범죄만을 적용하였으므로 8,040,719원으로 나타났고, 강도, 방화, 절도, 그리고 교통범죄만을 적용한 보험회사유지비용의 경우 37,616,904원으로 나타났다. 결과단계에서는 생산차질 비용이 77,321,69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빼앗긴 재산가치 비용이 75,413,904원으로 나타났다. 대응단계에서는 교정에서의 범죄 1건당 평균합계비용이 399,999,09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찰의 경우 94,841,148원, 그 밖에 소년보호, 갱생보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단계들 중에서 범죄유형별로 범죄 1건당 평균합계비용은 먼저 예방단계에서는 교통범죄가 12,107,237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도, 절도, 방화 등의 순이었다. 결과단계에서는 강도가 22,541,84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화가 21,208,440원, 그 밖에 횡령·배임, 위조, 살인, 강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응단계에서는 살인이 101,100,30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강간이 82,298,588원, 그 밖에 교통, 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사법기관별로 살인, 강간, 교통 범죄 등의 비용 상위 범죄항목들의 1건당 평균소요 예산내역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교정, 경찰, 소년보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정책의 목표와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36,654,538,945,578(약 36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범죄의 예방단계에서의 비용은 11,537,288,580,0063(약 11조 5천억)원으로 전체의 약 31.5%를 차지하고, 범죄 실행에 따른 결과단계에서의 비용은 15,485,650,637,572(약 15조 5천억)원으로 전체의 42.2%에 해당하며, 결과에 따른 대응단계에서의 비용은 9,631,599,728,000(약 9조 6천억)원으로 전체의 26.3%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결과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예방단계가 대응단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범죄유형별로 본 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살인, 강간, 교통 등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결과에서 추정된 값을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영국(Brand, Sam, and Price, 2000)의 경우인 약 100조원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이며, 호주(Walker, 1997)에서 보고하고 있는 19조 6천억원에서 21조 4천억원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또한, 국내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의 5대 범죄만을 중심으로 추정된(박철현·박정산·송태정, 2007) 규모를 전체범죄로 환산한 비용인 약 30조원 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이다<sup>22)</sup>.

22) 각 연구 결과를 세부항목별로 비교해보면, 영국의 연구(Brand, Sam, and Price, 2000)에서는 예방단계의 비용으로 약 1조원, 결과단계의 비용으로 약 76조원, 대응단계의 비용으로 약 22조원이 각각 추정되었다. 실행비용이 다른 단계의 비용보다 높게 추정된 이유는 살인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비용이 다른 항목들보다 많이 추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범죄 1 건당 평균비용을 살펴보면, 살인이 2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1년에 발생건수가 1,100건이므로 전체비용은 약 22조원),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심각한 상해(serious wounding)가 2억 4천만원(1년에 발생건수가 110,000건 약 26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전체건수를 고려했을 때는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보다는 더 자주 발생하는 상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각성정도는 가장 높은 살인의 사회적 비용이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는 폭력·상해, 사기·공갈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낮게 추정되었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호주의 연구(Walker, 1997)결과를 보면, 예방단계의 비용이 최소 1조 4천억원 결과단계의 비용이 최소 11조 3천억원에서 최대 13조 1천억원, 대응단계의 비용이

하지만 본 연구는 추정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들을 지닌다. 가장 중요한 한계점으로는 추정의 편의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범죄의 비용 추정할 때 이용 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그 첫 번째 요인은 실제 범죄피해건수와 공식적으로 조사된 범죄피해건수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고율과 관련한 설명은 공식통계상의 범죄 증가 혹은 감소 현상에 대한 부분적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범죄가 늘거나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양 지표 사이의 괴리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황지태, 2009). 본 연구에서는 공식통계로 인정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공식통계 상의 범죄피해건수보다 실제범죄피해건수가 더 많기 때문에 통계치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의 실제피해 건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적 비용 추정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비용추정의 편의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은 추정방식에서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 비용항목의 추정을 위해 먼저 기존에 이용가능한 국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비용항목별 총예산을 추정하고 여기에 범죄유형별 발생건수를 적용하여 각각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경우 해당 비용항목별 총예산이 과연 당해년도의 범죄발생에 따른 예산만을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범죄유형별 평균비용을 먼저 산출하여 이에 근거한 해당 비용항목별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국내의 실질적인 기초연구가 부재하여 부득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비용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을 가져오게 하는 세 번째 원인으로서는 활용한 자료들 간에 수집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응단계에서 사용된 각 형사사법기관별 통계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기관별 자료수집 방법이 다르고 통계표로 제시한 범죄

---

최대 6조 9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용 추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포함할 수 없는 비용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본 연구결과를 호주에서 발생한 범죄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때 실행단계에서는 사기와 횡령이 3조 2천억원에서 3조 7천억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2조 천억원으로 마약범죄가 있고 있다. 결과단계에서는 경찰의 직무수행과 법집행 항목이 3조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연구인 청소년범죄의 사회적비용추정의 경우는 예방단계의 비용이 약 174억원, 결과단계의 비용이 4,610억원, 대응단계의 비용이 1,53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이라는 대상과 5대범죄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수치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

의 유형 항목이 서로 상이하다. 때문에 각기 다른 대상과 범죄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 추정의 편차를 가져올 수 있다.

비용추정의 정확도를 낮추는 네 번째 원인으로는 범죄비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추정불가능한 항목들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예방단계에서는 조심 및 회피행동비용과 범죄에 대한 공포 및 삶의 질 저하 항목이 추정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결과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액, 피해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저하가, 그리고 대응단계에서는 재판에서의 오심, 증인의 경제적·정신적 비용, 가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 가해자 자녀들의 부적절한 양육 항목이 추정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비용추정결과를 낮게 추정하는 원인이 된다.

비용추정의 편의를 가져오는 마지막 요인으로는 예방단계에서의 자료부족을 들 수 있다. 보험사 유지비용을 예방단계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경우 생명보험사의 운영·유지비용을 제외함으로써 과소추정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한편 손해보험의 운영·유지비용은 전체를 계상하는데 사용됨으로써 과대추정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한계점은 범죄유형별 심각성점수의 적용가능성 여부와 관련된다. 범죄백서에서 분류하고 있는 범죄유형전체를 포함한 범죄비용추정을 할 수 있다면 연구결과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으나, 기존 연구들 중 범죄백서 내의 모든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심각성 점수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전무하다. 때문에 심각성 점수를 적용한 비용추정 방식을 채택한 본 연구에서도 부득불 심각성점수가 적용 가능한 범죄유형만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제언하고자 하는 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 결과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는데 국내의 이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그 내용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종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들에 더하여 추가적인 내용들을 반영하는 직접적인 범죄피해조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건부가치측정법과 같이 간접적인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시도되고 그 결과물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에 후속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성과

물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 때 이를 토대로 범죄의 비용추정과 관련된 더욱 정확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결과단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범죄가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의료적 비용을 비롯한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결과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항목들과 같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비용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차원에서부터 강화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형사사법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예방 또는 재범방지적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구성원들의 사회복지실천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처리적인 성격의 경제적 보상체계는 최근의 충격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계기로 국가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같은 예방적 차원의 정책은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방식의 첫 단계인 예방단계에서의 사회체계적인 노력 및 결과단계에서 야기할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대비책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들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관한 비용 추정의 단계를 넘어서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나 비용·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각각의 형사사법기관별로 범죄 감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구상하며 이를 실현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투자가 얼마만큼의 재범률을 감소시켰고, 국민의 안전이 얼마나 보장되었으며, 그 밖의 제도적 장치들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변화하였는지 등의 편익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단순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치로의 환산이 어려운 결과물을 지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처럼 형사사법체계나 정책을 비용·편익 분석의 차원으로만 접근한다면 인

간다운 삶의 추구 등과 같은 더 상위의 이념이나 가치가 소홀히 되기 쉽다. 가정하건데,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도록 추구하는 그들의 생활방식이나 사과의 개선이 동일하다고 할 때, 비용·편익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삶의 추구 등의 가치 추구를 위한 예산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편적 가치란 무시되고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현실적 차원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효율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인간다운 삶의 추구 등과 같이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기본이념을 도외시하고 매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권오상 (2007). 환경경제학. 서울: 박영사.
- 김동건 (2008). 비용·편익분석 (제3판). 서울: 박영사.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9-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심영희, 조정희 (1991).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윤, 김상봉 (2004).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 영향 분석. 서울: 박영사.
- 김현철 (2010). 2010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중점추진방향. 제1회 형사사법포럼: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법무부연수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주최.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경찰청.
- 대검찰청 (2009). 검찰연감. 대검찰청.
- 대법원 (2009). 사법연감. 대법원.
- 박철현, 박정선, 송대정 (2007). 청소년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5대 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9(1), 331-358.
- 박철현, 장규원, 정현미, 진수명 (1999).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2010). 범죄피해구조금 통계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게재용.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 법무연수원 (2009). 범죄백서. 법무부연수원.
- 심재익, 유정복, 최병호 (2005). 교통사고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2003. 교통개발연구원.
- 유정복 (2008). 교통사고의 심리적 비용 산정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울.
- 왕영숙 (2000).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개인 선호성 방법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천.
- 이수범, 심재익 (2001). 교통사고비용 1999. 교통개발연구원.
- 이재상 (1997). 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 이준구·이창용. (2005). 경제학원론 (제3판). 서울: 법문사.
- 황지태 (2009).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279-303.
-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Brand, Sam and Richard Price (2000). *The economic and social cost of crime*. Home Office Research Study 217.
- Cook, Philip J. and Jens Ludwig (2000). *Gun violence: The real co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M. (1988). Pain, suffering, and jury awards: A study of the cost of crime to victims. *Law and Society Review*, 22, 538-55.
- \_\_\_\_\_ (2005). The Monetary Value of Saving a High-Risk Youth.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 5-33.
- Cohen, Mark A., Roland T. Rust, Steen, Sara and Tidd, Simon T. (2004). Willingness-To-Pay for Crime Control Programs. *Criminology*, 42 (1), 89-109.
- Cohen Mark A., Ted R. Miller and Shelli B. Rossman (1994).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Violent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 Consequences and Control of Violence*. Vol. 4. Albert J. Reiss, Jr. and Jeffrey A. Roth (eds).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Corbett, Claire and Frances Simon (1991). Police and Public Perceptions of the Seriousness of Traffic Offenc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1, 153-164.
- Davis, R. K. (1963). *Recreation planning as an economic problem*. *Nat. Res. J.*, 3, 239-249.
- Demmert, H. G. (1979). *Crime and Crime Control: What Are the Social Costs?* Technical Report CERDCR-3-79. Center for Econometrics Studies of the Justice System, Hoover Institutio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 Dubourg, Richard and Joe Hamed (2005).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 against individuals and households 2003/04*. Home Office Online Report 30/05.
- Giracy-Wantrup, S. V. (1952). *Resource Conservation: Economics and Polici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ay, C. M. (1979). *The Costs of Crime*.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 Levi, M. and S. Jones. (1985). Public and Police Perceptions of Crime Seriousness in England and Wal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5, 234-250.
- O'Connell, Michael and Anthony Whelan (1996). Taking Wrongs Seriously: Public Perceptions of Crime Seriousnes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6, 299-318.
- Rossi, Peter H., Emily Waite, Christine E. Bose, and Richard E. Berk (1974). The Seriousness of Crimes: Normative Structure and Individual Differences. *American Sociology Review*, 39, 224-237.
- Scott, Joseph E. and Fahad Al-Thakeb (1977). *The Public's Perceptions of Crime: A*

- Comparative Analysis of Scandinavia, Western Europe, the Middle East, and the United States*. C. Huff, (eds). Contemporary Corrections, California: Sage.
- Walker, John (1997). Estimates of the Costs of Crime in Australia in 1996.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72, 1-6.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Warr, Mark (1989). What is the Perceived Seriousness of Crimes?. *Criminology*, 27, 795-821.
- Welsh, Brandon C., Farrington, David P., and Sherman, Lawrence W. (2001). *Costs and benefits of preventing crim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Welsh, Brandon C., Rolf Loeber, Brandly R. Stevens, Magda Stouthamer-Loeber, Mark A. Cohen, and David P. Farrington (2008). Costs of Juvenile Crime in Urban Areas: A Longitudinal Perspective.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6(3), 3-27.

■ 부록 □

[표 2] 예방단계에서의 범죄유형별 1건당 평균비용

구분	추정 항목	총예산 (A)	추정 내역						
			범죄 유형	발생건수 (B)	심각성점 수(C)	유형별비중 (D=B*C)	유형 비중별 비율(E)	범죄유형별 소요예산 (F=A*E)	1건당 평균소요 예산 (G=F/B)
	보안 경비	1,252,564,580,006	절도	223,264	2.76	616,208.64	0.9031	1,131,223,852,992	5,066,754
			손괴	40,801	1.62	66,097.62	0.0969	121,340,727,014	2,973,965
	보험사 유지 비용	10,284,724,000,000	강도	4,827	5.58	26,934.66	0.0049	50,558,809,885	10,474,168
			절도	223,264	2.76	616,208.64	0.1125	1,156,679,738,272	5,180,771
			방화	1,946	5.25	10,216.50	0.0019	19,177,300,964	9,854,728
			교통	748,173	6.45 <sup>23)</sup>	4,825,715.85	0.8808	9,058,308,150,879	12,107,237
소계	11,537,288,580,006								

23) 교통범죄의 경우 박철현 외 3인(1999)의 연구에서 ‘뺑소니(11.42)’와 ‘음주운전(4.66)’ 항목만을 적용하여 각각의 비율점수의 값들을 산술평균하여 구한 값인 8.04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헌의 연구결과에서 측정된 자동차 관련 문항 두 가지 즉, ‘교통사고 사망(7.0)’과 ‘교통사고 3주 상해(2.73)’ 항목을 추가하여 이 들 네 가지 항목들의 산술평균값인 6.45를 적용하였다. 물론 각 항목에 대한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네 항목의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게 되면 교통범죄를 설명해주는 정확한 값이 될 수 없겠지만, 기존 연구에서처럼 ‘뺑소니’와 ‘음주운전’ 항목만을 계산하여 적용하거나, 빈도수가 가장 많을 수 있는 ‘교통사고 3주 사고’ 항목만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뢰도와 타당성이 있는 수치가 될 것이다.

[표 3] 결과단계에서의 범죄유형별 1건당 평균비용

구분	추정 항목	총예산 (A)	추정 내역						
			범죄 유형	발생건수 (B)	심각성 점수(C)	유형별비중 (D=B*C)	유형 비중별 비율(E)	범죄유형별 소요예산 (F=A*E)	1건당 평균소요 예산 (G=F/B)
결과 단계	신체적·정신적 피해	1,877,068,907,600	폭행·상해	252,099	5.02	1,265,536.98	0.1577	296,053,573,724	1,174,354
			강도	4,827	5.58	26,934.66	0.0034	6,300,963,525	1,305,358
			강간	15,094	9.92	149,732.48	0.0187	35,027,689,042	2,320,637
			살인	1,120	12.04	13,484.80	0.0017	3,154,568,609	2,816,579
			방화	1,946	5.25	10,216.50	0.0013	2,389,998,383	1,228,159
			사기·공갈	208,115	3.30	686,779.50	0.0856	160,661,860,182	771,986
			횡령·배임	34,571	5.03	173,892.13	0.0217	40,679,480,207	1,176,694
			절도	223,264	2.76	616,208.64	0.0768	144,152,855,993	645,661
			손괴	40,801	1.62	66,097.62	0.0082	15,462,556,152	378,975
			약물	9,898	3.33	32,960.34	0.0041	7,710,581,834	779,004
			위조	22,157	4.68	103,694.76	0.0129	24,257,848,455	1,094,816
			풍속	11,989	4.39	52,631.71	0.0066	12,312,406,578	1,026,975
			교통	748,173	6.45	4,825,715.85	0.6014	1,128,904,524,917	1,508,882
결과 단계	피해자 (가족) 지원비용	86,466,503,210	폭력·상해	252,099	5.02	1,265,536.98	0.1573	13,603,298,362	53,960
			강도	4,827	5.58	26,934.66	0.0033	289,521,541	59,980
			강간	15,094	9.92	149,732.48	0.0186	1,609,479,321	106,630
			살인	1,120	12.04	13,484.80	0.0017	144,948,556	129,418
			방화	1,946	5.25	10,216.50	0.0013	109,817,492	56,432
			사기·공갈	208,115	3.30	686,779.50	0.0854	7,382,215,293	35,472
			횡령·배임	34,571	5.03	173,892.13	0.0216	1,869,172,189	54,068
			절도	223,264	2.76	616,208.64	0.0766	6,623,646,812	29,667
			손괴	40,801	1.62	66,097.62	0.0082	710,485,478	17,413
			약물	9,898	3.33	32,960.34	0.0041	354,291,772	35,794
			위조	22,157	4.68	103,694.76	0.0129	1,114,618,364	50,305
			풍속	16,598	4.39	72,865.22	0.0091	783,230,631	47,188
			교통	748,173	6.45	4,825,715.85	0.5999	51,871,777,399	69,331
결과 단계	생산차질 비용	8,966,194,615,932	폭력·상해	252,099	5.02	1,265,536.98	0.1573	1,410,601,978,818	5,595,429
			강도	4,827	5.58	26,934.66	0.0033	30,022,105,474	6,219,620
			강간	15,094	9.92	149,732.48	0.0186	166,895,899,463	11,057,102
			살인	1,120	12.04	13,484.80	0.0017	15,030,525,275	13,420,112
			방화	1,946	5.25	10,216.50	0.0013	11,387,589,098	5,851,793
			사기·공갈	208,115	3.30	686,779.50	0.0854	765,503,131,889	3,678,270

		횡령·배임	34,571	5.03	173,892.13	0.0216	193,824,903,227	5,606,575
		절도	223,264	2.76	616,208.64	0.0766	686,842,929,670	3,076,371
		손괴	40,801	1.62	66,097.62	0.0082	73,674,207,108	1,805,696
		약물	9,898	3.33	32,960.34	0.0041	36,738,492,483	3,711,709
		위조	22,157	4.68	103,694.76	0.0129	115,581,003,132	5,216,455
		풍속	16,598	4.39	72,865.22	0.0091	81,217,558,351	4,893,214
		교통	748,173	6.45	4,825,715.85	0.5999	5,378,874,291,942	7,189,346
의료비용	56,142,910,830	폭력·상해	252,099	5.02	1,265,536.98	0.1823	10,236,720,497	40,606
		강도	4,827	5.58	26,934.66	0.0039	217,870,035	45,136
		강간	15,094	9.92	149,732.48	0.0216	1,211,161,405	80,241
		살인	1,120	12.04	13,484.80	0.0019	109,076,329	97,390
		방화	1,946	5.25	10,216.50	0.0015	82,639,588	42,466
		절도	223,264	2.76	616,208.64	0.0888	4,984,410,346	22,325
		약물	9,898	3.33	32,960.34	0.0047	266,610,770	26,936
빼앗긴 재산가치	4,499,777,700,000	교통	748,173	6.45	4,825,715.85	0.6953	39,034,421,860	52,173
		강도	4,827	5.58	26,934.66	0.0160	71,979,016,869	14,911,750
		방화	1,946	5.25	10,216.50	0.0061	27,302,131,374	14,029,872
		사기·공갈	208,115	3.30	686,779.50	0.4079	1,835,319,741,035	8,818,777
		횡령·배임	34,571	5.03	173,892.13	0.1033	464,701,784,196	13,441,954
		절도	223,264	2.76	616,208.64	0.3660	1,646,729,236,368	7,375,704
		손괴	40,801	1.62	66,097.62	0.0393	176,636,412,155	4,329,218
소계	15,485,650,637,572	위조	22,157	4.68	103,694.76	0.0616	277,109,378,002	12,506,629

[표 4] 대응단계에서의 범죄유형별 1건당 평균비용

구분	추정 항목	총예산 (A)	추정 내역						1건당 평균소요 예산 (G=F/B)
			범죄 유형	발생건수 (B)	심각성 점수(C)	유형별비중 (D=B*C)	유형 비중별 비율(E)	범죄유형별 소요예산 (F=A*E)	
대 응 단 계	경찰	6,803,950,000,000	폭력	305,508	5.02	1,533,650.16	0.3082	2,096,772,956,090	6,863,234
			강도	4,811	5.58	26,845.38	0.0054	36,702,416,397	7,628,854
			강간	9,883	9.92	98,039.36	0.0197	134,037,268,760	13,562,407
			살인	1,109	12.04	13,352.36	0.0027	18,255,054,561	16,460,825
			방화	1,443	5.25	7,575.75	0.0015	10,357,399,710	7,177,685
			사기	202,132	3.30	667,035.60	0.1340	911,956,483,497	4,511,688
			횡령 배임	30,825	5.03	155,049.75	0.0312	211,980,627,087	6,876,906
			절도	223,216	2.76	616,076.16	0.1238	842,285,851,670	3,773,412
			손괴	40,801	1.62	66,097.62	0.0133	842,285,851,670	20,643,755
			약물	6,798	3.33	22,637.34	0.0045	30,949,276,144	4,552,703
			위조	32,171	4.68	150,560.28	0.0303	205,842,721,893	6,398,394
			풍속	12,377	4.39	54,335.03	0.0109	74,285,664,647	6,001,912
			교통	242,695	6.45	1,565,382.75	0.3145	2,140,157,059,110	8,818,299
	경찰	629,021,728,000	폭력 상해	403,324	5.02	2,024,686.48	0.2258	142,012,789,499	352,106
			강도	4,039	5.58	22,537.62	0.0025	1,580,802,913	391,385
			강간	13,377	9.92	132,699.84	0.0148	9,307,650,656	695,795
			살인	989	12.04	11,907.56	0.0013	835,203,785	844,493
			방화	1,443	5.25	7,575.75	0.0008	531,367,894	368,238
			사기 공갈	261,251	3.30	862,128.30	0.0961	60,470,223,908	231,464
			횡령 배임	38,037	5.03	191,326.11	0.0213	13,419,734,291	352,807
			절도	85,754	2.76	236,681.04	0.0264	16,600,957,750	193,588
			손괴	33,227	1.62	53,827.74	0.0060	3,775,511,708	113,628
			약물	7,698	3.33	25,634.34	0.0029	1,798,008,811	233,568
			위조	32,171	4.68	150,560.28	0.0168	10,560,393,207	328,258
			풍속	12,377	4.39	54,335.03	0.0061	3,811,093,349	307,917
			교통	805,288	6.45	5,194,107.60	0.5792	364,317,990,228	452,407
	법원	1,067,672,000,000	폭력 상해	128,704	5.02	646,094.08	0.1268	135,391,966,179	1,051,964
			강도	1,937	5.58	10,808.46	0.0021	2,264,962,172	1,169,314
			강간	6,021	9.92	59,728.32	0.0117	12,516,342,328	2,078,781
			살인	725	12.04	8,729.00	0.0017	1,829,201,829	2,523,037
방화			684	5.25	3,591.00	0.0007	752,510,456	1,100,161	
사기 공갈			34,029	3.30	112,295.70	0.0220	23,532,076,964	691,530	



			교통	903	6.45	5,824.35	0.1400	1,273,587,250	1,410,396
교 정	998,381,000,000	폭력 상해	2,836	5.02	14,236.72	0.0864	86,296,360,554	30,428,900	
		강도	3,855	5.58	21,510.90	0.1306	130,389,049,039	33,823,359	
		강간	1,855	9.92	18,401.60	0.1117	111,541,921,760	60,130,416	
		살인	3,851	12.04	46,366.04	0.2815	281,049,322,125	72,980,868	
		방화	235	5.25	1,233.75	0.0075	7,478,417,419	31,823,053	
		사기 횡령	3,772	3.30	12,447.60	0.0756	75,451,549,066	20,003,062	
		절도	5,610	2.76	15,483.60	0.0940	93,854,365,912	16,729,833	
		손괴	89	1.62	144.18	0.0009	873,951,954	9,819,685	
		약물	2,208	3.33	7,352.64	0.0446	44,568,276,433	20,184,908	
		위조	874	4.68	4,090.32	0.0248	24,793,613,241	28,367,979	
		풍속	250	4.39	1,097.50	0.0067	6,652,533,428	26,610,134	
		교통	3,464	6.45	22,342.80	0.1357	135,431,639,070	39,096,893	
		소계	9,631,599,728,000						

[표 5] 범죄유형별 사회적 비용 추정 (198-199쪽 표는 펼침면으로 연결된 표입니다.)

	폭력,상해	강도	강간	살인	방화	사기,공갈	횡령,배임
보안경비	-	-	-	-	-	-	-
보험회사	-	10,474,168	-	-	9,854,728	-	-
소계	-	10,474,168	-	-	8,096,786	-	-
신체적·정신적 피해	1,174,354	1,305,358	2,320,637	2,816,579	1,228,159	771,986	1,1764,694
피해자 가족지원비용	53,960	59,980	106,630	129,418	56,432	35,472	54,068
생산차질비용	5,595,429	6,219,620	11,057,102	13,420,112	5,851,793	3,678,270	5,606,575
의료비용	40,606	45,136	80,241	97,390	42,466	-	-
빼앗긴 재산가치	-	14,911,750	-	-	14,029,872	8,818,777	13,441,954
소계	6,864,349	22,541,844	13,564,610	16,463,499	21,208,722	13,304,505	20,279,291
경찰	6,863,234	7,628,854	13,562,407	16,460,825	7,177,685	4,511,688	6,876,906
검찰	352,106	391,385	695,795	844,493	368,238	231,464	352,807
법원	1,051,964	1,169,314	2,078,781	2,523,037	1,100,161	691,530	1,054,059
보호관찰	459,283	510,518	907,587	1,101,547	480,326	190,758	190,758
소년보호	1,899,926	2,111,869	3,754,435	4,556,794	-	1,248,955	3,181,536
갱생보호	1,097,703	1,220,156	2,169,167	2,632,739	1,147,996	721,598	1,099,890
교정	30,428,900	33,823,359	60,130,416	72,980,868	31,823,053	10,001,531	10,001,531
소계	42,153,116	46,855,455	83,298,588	101,100,303	42,097,459	17,597,524	22,757,487
합계	49,017,465	79,871,467	96,863,198	117,563,802	73,160,909	30,902,029	43,036,778

절도	손괴	약물	위조	풍속	교통	소계
5,066,754	2,973,965	-	-	-	-	8,040,719
5,180,771	-	-	-	-	12,107,237	37,616,904
9,323,350	2,973,965	-	-	-	12,107,237	45,657,623
645,661	378,975	779,004	1,094,816	1,026,975	1,508,882	16,228,080
29,667	17,413	35,794	50,305	47,188	69,331	745,658
3,076,371	1,805,696	3,711,709	5,216,455	4,893,214	7,189,346	77,321,692
22,325	-	26,936	-	-	52,173	407,273
7,375,704	4,329,218	-	12,506,629	-	-	75,413,904
11,149,728	6,531,302	4,553,443	18,868,205	5,967,377	8,819,732	170,116,607
3,773,412	2,214,829	4,552,703	6,398,394	6,001,912	8,818,299	94,841,148
193,588	113,628	233,568	328,258	307,917	452,407	4,865,654
578,371	339,478	697,817	980,715	919,945	1,351,627	14,536,799
252,514	-	304,664	428,176	401,644	590,115	5,817,890
1,044,581	-	1,260,309	-	-	2,441,139	21,499,544
603,518	-	728,158	-	-	1,410,396	12,831,321
16,729,833	9,819,685	20,184,908	28,367,979	26,610,134	39,096,893	389,999,090
23,175,817	12,487,620	27,962,127	36,503,522	34,241,552	54,160,876	544,391,446
44,573,070	21,992,887	32,515,570	55,371,727	40,208,929	75,087,845	760,165,676

# Estimates of the Social Costs of Crime in Korea

## -considering the seriousness index of crime-

Cho, HeungSik\* · Min, WonHong\*\* · Kim, HyunMin\*\*\*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social costs of crime committed in Korea in 2008.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estimating social costs of crime is an essential basis for criminal justice policy and decision making. However, to dat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social costs of crime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veloping crime-related studie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categorize the types and scope of crime, define the main concepts such as opportunity costs, transfer payments, and social costs vs economic costs, and confirm measurable factors, all of which are necessary to measure crime costs. Secondly, divide the costs relating to crime into three categories, and estimate them: costs in prevention of crime, costs as a consequence of crime, and costs in response to crime.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llows the direct estimation due to the severity of types and the incidence of crime. The advantage of this approach is to consider the types of crime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but it does not include all types of crime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total costs of crime in Korea in 2008 are approximately 37trillion KRW per year. More specifically, about 11.5trillion KRW is estimated as the

---

\* Ph.D.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chohs@snu.ac.kr)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minwonh@nate.com)

\*\*\* Student in Doctorial program,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imagine123@naver.com)

costs in anticipation of crime, 15.5trillion KRW is estimated as costs as a consequence of crime, and 9.6trillion KRW for response to crime.

However, due to the shortage of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not fully reliable and verified. Most estimates of costs as a consequence of crime are made using relevant Korean data but since there is enough data available, it has no choice but to have an over or under estimates. Therefore, it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that follow-up studies are conducted in order to measure social costs of crime in Korea accurately.

**Key words:** social costs of crime, incidence of crime, types of crime, seriousness index, in anticipation of crime, as a consequence of crime, in response to crime

◆ 2010.6.30. 접수 / 2010.7.29. 1차수정 / 2010.8.9. 게재확정